

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2019· 7· 1 조례 제1505호

제1조(「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중 순위 1의 장애인 란 중 “장애등급 1~2급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”으로 하고, 순위 2의 장애인 란 “장애등급 3~4급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”으로 하며, 순위 3의 장애인 란을“미과세대상 등록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서 중“장애등급”을 각각“장애정도”로 하고, 장애등급 란의 “급”을 각각 삭제하며,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중 “장애종류,등급” 및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중 “장애명 및 등급”을 각각 “장애유형 및 정도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제4조(「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

제17조제1항제1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중 “1급부터 3급까지의”를 “장애정도가 심한”으로 하고, 단서 중 “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장애인차량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)
1. 장애인차량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)

제7조(「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제2)의 가) 중 “장애등급 1급부터 3급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하고, “4급부터 6급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11제3호 중 “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”를 “장애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